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

2004. 12.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에 대한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모듈의 시험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암호기술” 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수신·송신중에 정보의 위·변조, 유출, 훼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암호·전자서명·인증·키관리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암호모듈” 이라 함은 암호기술을 하드웨어·소프트웨어·펌웨어 등의 형태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국가용 암호모듈” 이라 함은 행정기관용 암호모듈과 대국민행정업무용 암호모듈로 분류된 암호모듈을 말한다.
4. “행정기관용 암호모듈” 이라 함은 행정기관 자체 또는 상호간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암호모듈을 말한다.
5. “대국민행정업무용 암호모듈” 이라 함은 국민(민간기업 포함)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과 국민이 사용하는 암호모듈을 말한다.
6. “시험” 이라 함은 암호모듈의 안전성이 암호검증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증” 이라 함은 암호모듈 시험결과를 검증기관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8. “검증서” 라 함은 검증된 암호모듈에 대해 검증기관이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9. “검증 신청인” 이라 함은 시험기관에 암호모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암호모듈 개발자를 말한다.
10. “검증기관” 이라 함은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시험기관” 이라 함은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암호모듈 검증목록” 이라 함은 검증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검증된 암호모듈의 목록을 말한다.

13. “재검증”이라 함은 검증된 암호모듈의 검증유효기간 중에 암호기능이 변경 또는 개선되어 암호모듈을 수정한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시험기관과 검증 신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조(암호기술 사용원칙) ① 행정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은 공개 또는 비공개 암호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은 공개 암호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제 5조(암호모듈 사용원칙) ① 행정기관은 국가용 암호모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검증기관이 암호모듈 검증목록에 게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 의하여 검증된 국가용 암호모듈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암호모듈 검증체계

제 6조(검증기관) 검증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용 암호모듈 검증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시험기관의 시험업무 관리·감독 및 시험결과 검증
3. 검증서 발급
4. 검증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시험기관간의 분쟁 조정
5. 국가용 암호모듈 검증목록 관리
6. 국가용 암호모듈 시험기준의 승인
7. 국가용 암호모듈 검증기준의 개발

제 7조(시험기관) 암호모듈의 시험기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암호모듈 검증계약 체결 및 시험의 시행
2. 암호모듈 시험기준 및 시험관련 기술 개발
3. 기타 암호모듈 시험관련 업무

제 8조(신청인의 의무)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검증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각종 서류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 제출
2. 시험에 필요한 제반 시설 및 조건 등의 제공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물에 대한 시험기관과 검증기관의 사용 보장
4. 시험 및 검증결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홍보행위 금지
5.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수수료 납부

제 3 장 시험절차

제 9조(검증신청 준비)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증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증신청에 필요한 제출물 준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0조(검증계약 체결 등) ① 암호모듈의 검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증신청서에 서식에 기재된 제출물을 첨부하여 해당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검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기타 제출물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증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검증계약 체결의 거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검증신청서 및 제출물에 거부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검증신청서를 접수하고 검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검증계약 체결 후 해당 검증신청서 및 제출물 각 1부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검증계약 체결시 소정의 검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수수료 납부 절차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의 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 11조(시험반 구성) ①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시험기관 내부 전문가로 시험반을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시험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 12조(시험절차) ① 시험기관의 장은 제출물에 대한 시험반의 이해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제출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시험에 필요한 제반 시설 및 조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의 장은 검증대상 암호모듈이 시험기준에 명시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과정에서 제출물이 미비하여 시험 수행이 불가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제출물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물의 보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증을 중단하고 검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검증중단의 사유를 통보하고 이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험기관의 장은 암호모듈의 시험이 완료된 후, 시험결과보고서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검증절차

제 13조(검증 등) ①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험결과보고서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험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시험

결과가 검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험기관의 장에게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4조(검증위원회) ①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검증결과의 타당성·공정성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신청인과 시험기관간의 분쟁조정 등을 위하여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 검증·시험기관 등의 전문가 중에서 검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 또는 의결안건의 경미 등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검증결과가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증기관의 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 15조(검증서) ① 검증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증서를 발급하고 암호모듈 검증목록에 등재한다.

② 검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암호모듈 검증필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증필증 사용신청서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검증유효기간 및 재검증

제 16조(검증유효기간 등) ① 검증의 효력은 암호모듈 검증목록에 등재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검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신청인은 검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검증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시험기관의 장에게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된 암호모듈을 표본 추출하여 암호모듈 검증목록의 등재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검증유효기간 중 암호기능의 변경 또는 개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재검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기관의 장은 암호모듈의 변경 및 개선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검증의 수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7조(재검증) ①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된 암호모듈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인 및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재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재검증신청서와 기타 제출물을 검토하고 신청인과 재검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의 장은 재시험계획서와 신청인이 제출한 제출물 1부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재시험 완료 후 재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장이 보고한 재시험결과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⑥ 검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에 재시험의 추가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⑦ 검증기관의 장은 재시험결과를 승인할 경우 암호모듈 검증목록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검증기관의 장은 재검증 결과 검증효력의 유지가 불가능한 암호모듈일 경우 해당 암호모듈 검증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 18조(검증효력 중단) ① 검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암호모듈의 검증효력을 중단하고 검증목록에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인의 암호모듈 검증신청 자격을 3년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검증필증을 사용하는 경우

3.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검증된 암호모듈과 암호모듈 검증목록의 내용이 상호 일치하지 않은 경우

4. 제20조 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암호모듈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반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효력의 중단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해당 암호모듈 검증서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암호모듈이 삭제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는 각급기관에 통보하거나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제출물의 처리) ① 시험기관과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이 완료된 때에는 암호모듈의 원시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설계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며, 그 외 제출물은 검증서의 유효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과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과정에서 검증계약이 거부되거나 검증중단, 검증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출물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과 검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재사용할 수 없도록 폐기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칙

제 20조(보안유지) ① 시험기관의 시험반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검증과정에서 인지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험실은 시험기관의 보안업무 내규에 의하여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③ 시험기관의 장은 암호모듈의 검증업무에 관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가 된다.

④ 검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장은 접수된 제출물 및 시험결과보고서를 안전

하게 관리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이 검증된 암호모듈의 원시 프로그램, 하드웨어 설계서 등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조(세부지침) ① 시험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시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검증기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부지침을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비도 승인한 암호모듈은 이 지침에 의한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

<table>
<tr><td>접 수 번 호
제 호</td><td colspan="4">검 증 신 청 서</td></tr>
<tr><td rowspan="4">신청인</td><td>①상 호</td><td></td><td>②사업자번호</td><td></td></tr>
<tr><td colspan="3">③주 소 □□□-□□□</td><td>(전화:)
(FAX :)</td></tr>
<tr><td>④대표 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3">⑤담당자 성명 :
⑥부 서 :</td><td>(전화:)
(FAX :)</td></tr>
<tr><td rowspan="6">검증대상</td><td>⑦제 품 명</td><td></td><td>⑧개 발 기 간</td><td></td></tr>
<tr><td>⑨암호기술</td><td colspan="3">암호 □ 전자서명 □ 해쉬 □ 키관리 □ 기타 □</td></tr>
<tr><td>⑩사용제품명</td><td></td><td>⑪ 용 도</td><td></td></tr>
<tr><td>⑫제품구분</td><td colspan="3">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펌웨어 □ 기 타 □</td></tr>
<tr><td>⑬신청등급</td><td colspan="3">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 4 □</td></tr>
<tr><td colspan="5">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및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검증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5">제 출 물(시험 · 검증기관 각 1부)
1. 기본 및 상세설계
가. 암호모듈 스팩
나. 암호모듈 외부 포트 및 인터페이스
다. 암호모듈 기본구조 및 동작 메커니즘
라. 암호모듈이 제공하는 서비스
마. Finite State 모델 및 물리적 보안 메커니즘
바. 운용환경 및 암호 키 관리 메커니즘
사. EMI/EMC 및 Self-Test 메커니즘
2. 형상관리
가. 암호모듈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
나. 암호모듈 버전 부여방법
다. 암호모듈 형상변경 통제 방법
3. 제품 사용 설명
가. 암호모듈 설치 절차 및 보안관리 방법
나. 암호모듈 운용 방법
다. 암호모듈의 보안기능
라. 경고 등 사용방법
마. 안전한 시동, 백업, 유지보수 및 운용에 대한 절차
바. 하드웨어 보안모듈의 경우 자체진단 및 진단결과에 대한 설명과 예시
4. 암호모듈에 대하여 명백히 알려진 취약성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법
5. 개발과정 각 단계별 수행해야 하는 시험항목, 각 시험항목별 시험목적, 시험절차 및 결과
6. 제품 및 원시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 설계서</td></tr>
</table>

검증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인의 상호를 기재한다.
② 신청인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다.
③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한다.
④ 신청인의 사업장 대표를 기재한다.
⑤ 신청제품의 신청인측 검증업무 담당자를 기재한다.
⑥ 신청인의 검증담당자의 소속부서를 기재한다.
⑦ 검증대상 암호모듈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⑧ 검증대상 암호모듈의 개발기간을 기재한다.
⑨ 검증대상 암호모듈에 탑재된 검증대상 암호기술을 기재한다.
⑩ 검증대상 암호모듈의 탑재 혹은 탑재예정 제품을 기재한다.
⑪ 검증대상 암호모듈의 용도를 기재한다.
⑫ 검증대상 암호모듈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의 포함여부를 기재한다.
⑬ 검증대상 암호모듈의 신청등급을 기재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

<table>
<tr><td>접 수 번 호
제 호</td><td colspan="5">재 검 증 신 청 서</td></tr>
<tr><td rowspan="4">신청인</td><td>①상 호</td><td colspan="2"></td><td>②사업자번호</td><td></td></tr>
<tr><td colspan="3">③주 소 □□□-□□□</td><td>(전화:)
(FAX :)</td></tr>
<tr><td>④대표 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3">⑤담당자 성명 :
⑥부 서 :</td><td>(전화:)
(FAX :)</td></tr>
<tr><td rowspan="3">재검증대상</td><td>⑦모 듈 명</td><td colspan="2"></td><td>⑧검증서 번호</td><td></td></tr>
<tr><td>⑨사용제품명</td><td colspan="4"></td></tr>
<tr><td>⑩제품구분</td><td colspan="4">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펌웨어 □</td></tr>
<tr><td rowspan="9">검증 유지항목</td><td>⑪제출문서</td><td colspan="4"></td></tr>
<tr><td>⑫형 상</td><td colspan="4"></td></tr>
<tr><td>⑬오류보완</td><td colspan="4"></td></tr>
<tr><td>⑭기 능</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⑮암호논리</td><td>암 호</td><td colspan="3"></td></tr>
<tr><td>전자서명</td><td colspan="3"></td></tr>
<tr><td>해 쉬</td><td colspan="3"></td></tr>
<tr><td>키 관리</td><td colspan="3"></td></tr>
<tr><td>기 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및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검증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제 출 물(시험 · 검증기관 각 1부)
문제점 분석
변경 및 개선사항의 타당성 적절성 설명
변경 및 개선 전·후 안전성 비교, 분석
변경 제출물 범위 및 내용</td></tr>
</table>

재검증 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인의 상호를 기재한다.
② 신청인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다.
③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한다.
④ 신청인의 사업장 대표를 기재한다.
⑤ 신청제품의 신청인측 검증업무 담당자를 기재한다.
⑥ 신청인의 검증담당자의 소속부서를 기재한다.
⑦ 재검증대상 암호모듈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⑧ 재검증대상 암호모듈의 검증서 번호를 기재한다.
⑨ 검증대상 암호모듈의 탑재 혹은 탑재예정 제품을 기재한다.
⑩ 검증대상 암호모듈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의 포함여부를 기재한다.
⑪ 검증시 제출된 문서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⑫ 암호모듈의 형상이 변경된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⑬ 검증된 암호모듈의 취약점 및 오류 발견으로 수정 보완된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⑭ 검증된 암호모듈에 기능이 변경(추가, 삭제)된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⑮ 검증된 암호모듈의 암호논리가 변경된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

제 호

검증마크

검 증 서

Validation Certificate

검증번호

시험기관

시험기관
마크

암호모듈명 :
Module Name

신청인 :
Applicant

용도 :
Expenditure

검증등급 :
Validated Level

OOOO

OOOO

200 년 월 일

국가정보원장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별지 제4호 서식 >

암호모듈 검증필증

1. 검증필증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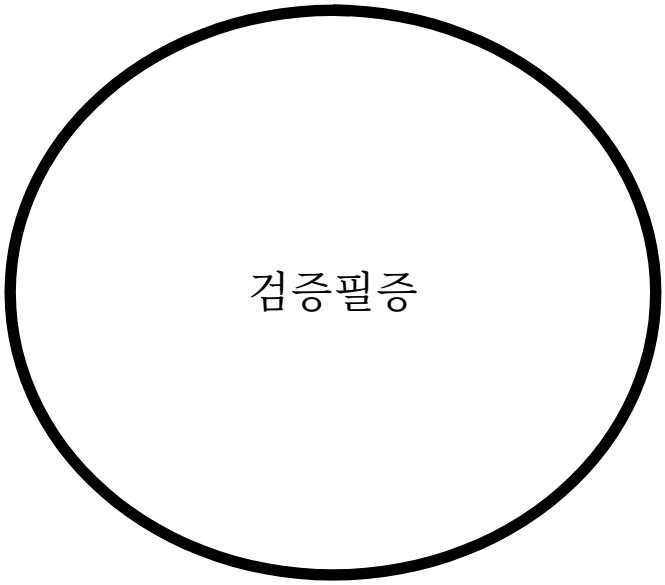

2. 검증번호는 다음과 같다.

검증등급 – 등급별 검증 일련번호 – 유효기간 만료연월

3. 위의 검증필증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또는 품질보증서 등에 부착하며, 검증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그 사용목적에 따라 동일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제5호 서식 >

<table>
<tr><td>접 수 번 호
제 호</td><td colspan="4">검 증 필 증 사 용 신 청 서</td></tr>
<tr><td rowspan="4">신청인</td><td>①상 호</td><td></td><td>②사업자번호</td><td></td></tr>
<tr><td colspan="3">③주 소 □□□-□□□</td><td>(전화:)
(FAX :)</td></tr>
<tr><td>④대표 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3">⑤담당자 성명 :
⑥부 서 :</td><td>(전화:)
(FAX :)</td></tr>
<tr><td colspan="2">⑦ 대상 암호모듈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⑧ 사용대상 제품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⑨ 검증 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⑩ 검증 등급</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⑪ 신청 수량</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및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검증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정보원장 귀하</td></tr>
</table>

검증필증 사용 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인의 상호를 기재한다.
② 신청인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다.
③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한다.
④ 신청인의 사업장 대표를 기재한다.
⑤ 신청제품의 신청인측 검증업무 담당자를 기재한다.
⑥ 신청인의 검증담당자의 소속부서를 기재한다.
⑦ 검증필증 사용대상 암호모듈명을 기재한다.
⑧ ⑦항에 기재된 암호모듈의 사용제품명을 기재한다.
⑨ ⑦항에 기재된 암호모듈의 검증 번호를 기재한다.
⑩ ⑦항에 기재된 암호모듈의 검증 등급을 기재한다.
⑪ 검증필증의 사용수량을 기재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암호모듈 검증 세부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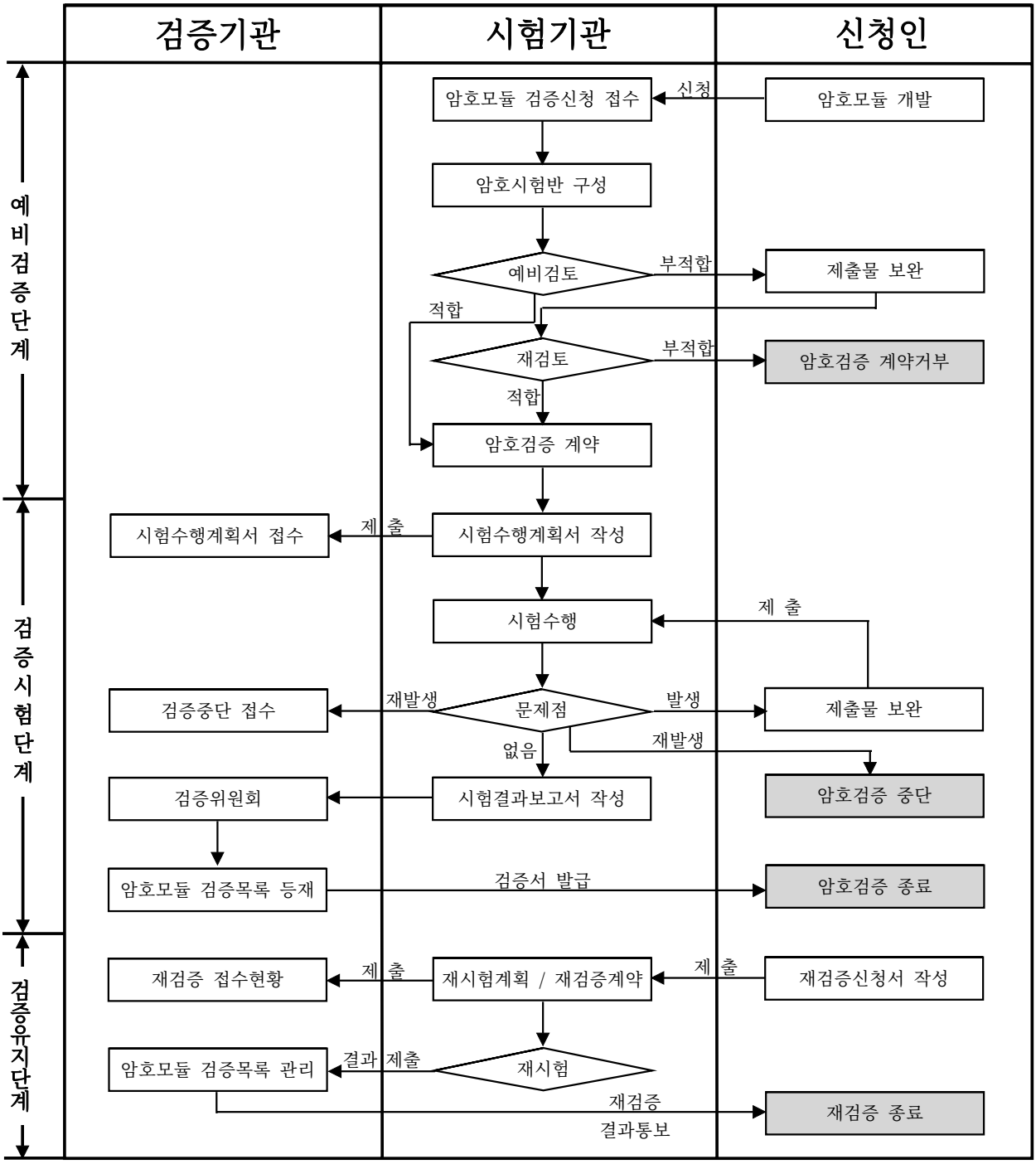

< 별지 제7호 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암호모듈 검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모듈 검증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다.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 (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라. 기타 관계법령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급(직 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